■ 치과 칼럼

의치(Dentures)

'의치' 는 흔히 틀니라고 불리며 크게 두 종류, 완전 틀니(complete denture) 그리고 부분 틀니 (removable partial denture)로 구분이 됩니다.

완전 틀니는 이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경우 잇몸과 턱뼈 위에 얹는 형태의 의치입니다. 부분 틀니에 비해 의치를 잡아주는 부위가 오로지 잇몸밖에 없기 때문에 저작 기능이 예전에 비해 10-30 % 정도 밖에 회복되지 못합니다.

부분 틀니는 치아가 부분적으로 없는 경우 여러 개의 고정 장치를 이용해 기존의 치아와 연결시켜 흔들림을 줄여 저작 기능을 향상시킨 형태의 틀니입니다. 완전 틀니에 비해 고정력이 높고 저작기능성도 40-60 % 회복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용 시 임프란트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가 없는 부분의 잇몸뼈가 조금씩 흡수되어 틀니가 덜그럭거리게 되고 심한 경우엔 잇몸 위에 그냥 얹어져서 저작 기능성이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요즈음엔 소수의 임프란트를 심은 후에 임프란트 위로 틀니를 고정시켜 주는 임플란트 오버덴쳐(overdenture)를 제작하기도 합니다.

틀니 치료에는 여러 차례의 치과 방문이 필요합니다. 보통 7-10 일 간격으로 4-5 회 정도 소요되어 완성되기까지의 기간은 보통 한 달 내외가 걸립니다. 틀니를 처음 쓰게 되면 치아에 붙이는 보철물이나 뼈 안에 심는 임프란트와는 달리 잇몸 위에 얹어지게 되는 형태이므로, 그 적응기간이 6-8 주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에서 어떠한 잇몸 부위가 의치 안쪽면에 의해 과도하게 부딪치거나 쓸려서 통증을 유발하기도 하게 되고 뺨이 씹힐 수도 있으니 치과를 방문하여 틀니를 조정해야 합니다.

잇몸뼈의 수축뿐만 아니라 틀니 자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1-3 년에 한번 정도는 정기적으로 고쳐주어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틀니 보정을 받아도 전체적인 틀니의 변형과 입안 구조의 변화로 5-6 년 정도에 한 번씩 새로 틀니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틀니를 처음 쓰실 땐 부드러운 음식이나 잘 부서지는 음식으로 잘게 잘라서 식사를 하시고 단단한 음식과 틀니에 들러 붙는 끈적거리는 음식은 가능하면 익숙해진 후 에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씹을 때에도 양쪽 어금니로 씹어서 드시는 훈련을 하셔야 후에 덜그럭거리는 문제를 조금이나마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잘 때는 틀니를 반드시 빼서 잇몸을 쉬게 해야 합니다.

지속적으로 끼고 지내면 잇몸이 부을 수도 있고 심하면 염증이 생기거나 상처가 생겨 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틀니의 재료 특성상 공기중 오래 놔두면 변형이 되어 맞지가 않게 됩니다. 그리하여 틀니를 빼 놓을 때에는 반드시 찬물에 담가 놓아야 합니다. 자기 전에 틀니용 솔로 잘 씻어 관리하고, 가끔은 틀니 세정액에 담가서 틀니 사이의 색 침착을 예방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착용 시 발생하게 되는 잇몸뼈 수축으로 인해 헐거워진 틀니는 뼈 이식을 하여 턱뼈의 높이와 넓이를 재건하고 소수의 임플란트를 심어 틀니에 연결시켜 고정력을 높이는 치료가 있습니다.

웰컴치과그룹 이주영 원장
(로마린다 치대 졸업)
Korea Town: (213) 381-2827
Irvine: (714) 838-2875
Fullerton: (714) 552-5373

■ 법률 칼럼

까다로워진 비이민, 이민 수속

까다로워진 비이민/이민 수속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 이민국 메모들을 중심으로 어떻게 이민 수속 절차가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바뀌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서류 미비 시 추가 서류 요청 없이 바로 거절

미 이민국은 지난 7월13일자 이민국 메모를 통하여 2018년 9월11일부터 영주권 신청서를 포함하여 다른 비이민서류를 제출한 이민/비이민 신청자들이 추가서류 요청(Request for Evidence)이나 거부의사 사전통보 (Notice of Intent to Deny)를 받지 않고 바로 거부 통보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메모에서 밝힌 것처럼 이는 과거에 서류가 덜 준비된 경우에 영주권/신분 변경 요청에 필수적인 서류를 의도적으로 제출하지 않았다가 추가서류 요청이 오면 나중에 제출하는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실 과거에 많은 신청인들이 단순히 서류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그리고 신분 만료일 전에 케이스 접수할 목적으로 서류가 미비된 상태로 이민국에 신청서를 접수한 예가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문가와 잘 상의하셔서 신청인의 자격 요건을 잘 따져서 자격 요건이 되는지를 잘 판단하고 또 필수적인 증거들을 모두 잘 제출하신다면 승인을 받는 일은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2. EAD (노동허가서) 발급에 관하여

영주권 신청 시에 같이 신청하던 노동허가서의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있어서 많은 분들이 애를 태우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90일 평균 처리 기간이 소요되었고 많은 경우 60일 정도면 노동허가증 카드를 받을 수 있었으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6개월 이상을 기다려야 카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카드 만료 180일 전에 카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이르다고 생각이 되시더라도 만료 180일 전에 미리 카드를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운전면허증을 갱신하는데 문제가 없고 또 노동허가증으로 일을 하고 계신 분들이 회사의 부담을 덜어 드릴 수 있습니다. 180 자동 연장이 규정이 있기는 합니다. 카드가 만료되기 전에 갱신 신청을 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카드가 없어도 180일 연장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하지만 DMV 나 회사에서 서류 확인이 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연장 신청을 꼭 하도록 하십시오.

3. 학생 신분 변경 시 주의 사항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미국 내에서 신청하시는 경우, 징검다리 비자로 학생 신분을 많이 선호하고 계십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계속 신분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만료 후 연장 신청에 부담이 없는 것이 징검다리 신분으로 많이 애용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2015년 프로디 학원의 학생비자 사기 사건 이후에 이민국의 특별 심사가 시작되면서 학생 신분으로 변경이 매우 까다로워 졌고 또 학생 신분으로 체류하면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학생 신분 유지에 대한 조사가 강력하게 이루어 지고 있어 주의가 요망됩니다.

2년 전부터 이민국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학생 신분 이전의 신분이 만료되고 나서 30일이 내에 지원한 학교의 프로그램이 시작을 할 수 없는 경우 자동으로 학생 신분 변경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학생 신분으로 변경을 신청하는 J-1의 경우 만약 10월 1일에 J-1 신분이 만료되었고 학교가 12월 15일에 시작하는 경우 통상적으로 J-1에게 주어지는 30일 그레이스 피리어드를 빼고 적어도 학교가 12월1일에는 시작해야 합니다. 이 경우는 학교가 12월15일에 시작하므로 자동으로 신분 변경이 거절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해결하기 하기 위해서는 신분 연장 시에 브리지라는 방문(B1/B2) 비자로의 변경을 같이 신청하여야 하고 또 신분이 만료되기 전에 넉넉하게 시간을 잡고 신분 변경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Law Offices of Joseph KW Choen
천관우 변호사
● LA Office: (213) 232-1655
3600 Wilshire Blvd, #1227
Los Angeles, CA 90010
● OC Office: (714) 522-5220
6281 Beach Blvd, #300
Buena Park, CA 90621

매주 첫째주 월요일 라디오 코리아 이민상담 진행

"과도한 빚, 고통의 시작입니다."
자신에 맞는 융자 선택을 도와드립니다!

김주용 (Jay Kim)
중앙일보 주택융자 강의
Passkey MLO Review 공동저서 /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SNA Financial (dba Lending Plus)
kimjy9855@gmail.com
NMLS#1560314

1. 일반 주택융자
2. 재융자: Cash out 재융자, 이자율/기간 조정 재융자
3. 정부 주택융자: FHA, VA 융자, 리버스 모기지 등

보다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습니다
부동산 에이전트 문의도 환영합니다

213.332.1718
3450 Wilshire Blvd. Suite 310
Los Angeles, CA 90010